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 규정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51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2

※ 참고자료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및 규모	1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 후 연장근무 제도	13
3. 출연(연) 직종·연령대별 구조 및 정년연장 인원 현황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우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4(정년 등) 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통 분담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연구원들의 정년을 61세로 조정하였고,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4개 포함)은 모두 개별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1세로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 및 근거 >

	기관명	정년퇴직일	근거규정
1	KIST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9조(정년)
2	녹색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연도 12월 31일	KIST인사규정 제9조(정년)
3	기초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50조(정년)
4	생명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
5	KISTI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가 되는 날)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
6	한의학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52조 (정년)
7	생기원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
8	ETRI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8조(직원의 정년)
9	국보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8조(정년)
10	건설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35조(정년)
11	철도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8조(정년)
12	표준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47조(정년)
13	식품연	만 61세에 이르는 연도 12월 31일	인사규정 제9조(정년)
14	김치연	만 61세에 이르는 연도 12월 31일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
15	지자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43조(정년퇴직)
16	기계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
17	에기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43조(정년)
18	전기연	만 61세에 이르는 연도 12월 31일	인사규정 제10조(일반직의 정년)
19	화학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54조(정년)
20	안전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62세 생일 전날)	취업규칙 제54조(정년)
21	원자력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 62세 생일 전날)	인사규정 제42조(정년)

책임급 직원은 65세, 선임급 이하 직원은 60세였으나, ‘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1998, 기획예산처)’에 따라 61세로 조정되었다고 설명함.

	기관명	정년퇴직일	근거규정
22	재료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 62세 생일 전날)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
23	핵융합연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만 62세 생일 전날)	취업규칙 제53조(정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12.)

임금피크제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의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모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²⁾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제4항³⁾에 근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임금피크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 등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정년연장기관 :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장자 증가분
2. 정년보장기관 :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④매년 설정하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별도정원은 별도 직군 정원으로 반영하거나 초임직급 정원으로 반영한다. 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정원 중 일부는 별도직군 정원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초임직급 정원으로 반영할 수 있다.

1. 별도직군 방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에서 제외하여 별도직군의 현원으로 관리
2. 초임직급 방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급의 현원으로 관리

⑤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 세부사항은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설정한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설계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표 초과달성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로 허용하고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한다.

⑦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 능력 및 기관별 직위·직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위·직무를 개발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직무 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및 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 역할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모두 정원 내 인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정년이후 재고용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도래 전에 정원 외 인력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⑨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연도의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총인건비에 관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인상률의 1/2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⑪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신규채용 규모 및 별도정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설계안과 별도정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⑫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금피크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등 관련 제도

거하여 2015년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세부적으로 각 기관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1차년도에 △10%, 2차년도에 △15%의 임금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음([참고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현황).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법률에서 65세로 연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임금피크제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연장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부담을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년연장을 통해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 우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대학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과 동일한 65세⁴⁾로 연장될 경우 우수한 연구인력의 대학 교원 등으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

변경 사항을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④기타공공기관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한 임금피크제를 준용한다.

4)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에도⁵⁾ 정년은 여전히 61세로 유지되며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소득 없는 기간(Income Crevasse)’이 장기화되고 있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기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8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⁶⁾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정년퇴직 대상자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정년을 적용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

5) 「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2007. 7. 23.) 부칙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임.

6) 2025년 2월 기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음.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81호),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42호),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62호),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61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05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76호),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53호),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51호)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의 연구기관 중 16개 기관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가 큰 우수연구원의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기관은 전 직종 대상으로 경력이 많은 직원의 근무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 4년간 재고용을 하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참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년 후 연장근무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직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19~'23년 5년간 연구기관의 정년퇴직 대상자 총 1,630명 중 정년 후 연장근무 인원은 정년퇴직 대상자 수의 74%인 1,206명으로서 정년퇴직 대상자 수 대비 실제 정년퇴직자의 수는 26%인 것으로 나타남.

< 5년간('19년~'23년) 정년연장 현황 >

연도	61세 정년퇴직 대상(A)	실제 정년퇴직(B)		기관 계속고용(C=D+E)		우수연구원(D)		정년 후 재고용(E)	
		인원	비율 (B/A)	인원	비율 (C/A)	인원	비율 (D/A)	인원	비율 (E/A)
2019	264	71	26.9%	193	73.1%	58	22.0%	135	51.1%
2020	294	70	23.8%	224	76.2%	64	21.8%	160	54.4%
2021	314	70	22.3%	244	77.7%	71	22.6%	173	55.1%
2022	316	73	23.1%	243	76.9%	62	19.6%	181	57.3%
2023	442	140	31.7%	302	68.3%	106	24.0%	196	44.3%
5년 계	1,630	424	26.0%	1,206	74.0%	361	22.1%	845	51.8%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12.)

정년연장은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우수연구자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각 기관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성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

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년연장 대상을 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정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률에서 특정 직군의 구체적인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년에 관한 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정년에 관한 규정 현황 >

- 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중략>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후략>
- ※ (사립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 교수 65세, 교직원 등 다양 (60~61세)(자체규정)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으로 교수 65세(정관), 교직원 60세(인사규정)
- ③ (공공기관 등) 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규정

구 분		정 년(직종별)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25개)	-전직종, 직급: 60세(IMF 이전 63~65세)
과기분야 특정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종 : 61세
	한국연구재단	-전직종 : 61세(IMF 이전 연구·행정 65세, 기능 58세)
	한국과학창의재단	-책임: 61세, 그외: 60세(IMF 이전 책임 61세, 외 59세)
	KISTEP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61세('99년 설립)
	국방과학연구소	-부연구위원, 연구원 및 기타직종: 60세 61세
4대 과기원	KAIST, GIST, DGIST, UNIST	-교수직: 65세, - 일반직, 기능직 등 : 61세
기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	60세
	국민연금공단(준정부기관)	60세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12.)

이처럼 개별 기관별로 연구원 등의 정년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정관이나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 것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의 연구기관이 2024년 2월 공공기관에서 해제⁷⁾된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및 운영 관리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안)은 각 기관이 기관별 규정에 따라 선별적 정년연장의 취지로 운영 중인 우수연구원 운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⁸⁾

셋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재원 부담 문제를 정년 이전에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일부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재원 부담을 다소 줄일 수는 있더라도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추산액은 다음과 같음.

7)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호(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2024. 2. 6.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5. 2. 기준)

제17조(우수연구원 운영) ① 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가 큰 고정력 연구자 활용 등을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하여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다.

② 우수연구원은 매년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직 정원의 2퍼센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는 1명으로 한다.

③ 62세 이상인 우수연구원 수는 연구기관별 연구직 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연구기관은 매년 우수연구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수연구원 업무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원장등은 우수연구원 자격상실 여부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후 략)

< 정년연장 인원 및 재정 소요 규모(추산) >

연도	2026년 (정년 62세)	2027년 (정년 63세)	2028년 (정년 63세)	2029년 (정년 64세)	2030년 (정년 64세)	2031년 (정년 65세)	2032년 (정년 65세)
연도별 정년연장* 대상인원	293명	268명	571명	650명	983명	1,087명	1,521명
현행 임피 기준** (평균 8,256만원)	242억원	221억원	471억원	537억원	812억원	897억원	1,256억원
피크 임금 기준 (평균 9,400만원)	276억원	252억원	537억원	611억원	924억원	1,022억원	1,430억원

* 연도별 정년연장 대상인원은 2024년 12월 기준 재직 중인 직원의 연령별 인원수로부터 추산한 것이며, 현재 실질적 정년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인원(정년퇴직 대상자의 74%)을 포함한 것임.

** 현행 임금피크제(2차년도 임금감액률:△15%) 하에서 산출한 소요로, '24년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피크임금(59세 임금)은 1인당 평균 9,400만원임.

정년연장 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로 인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바, 적정한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규 직원 채용이 감소하거나 기존 직원의 급여 인상 폭이 둔화되는 등 연구기관 안팎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 확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 부칙 제2조가 규정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⁹⁾는 정년연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200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공무원 등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위한 경과조치¹⁰⁾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9) 부칙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63세, 제29년부터 2030년까지는 64세, 2031년 이후에는 65세로 한다.

10)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113호 부칙 ②(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개정안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가 적용 중인 60~61세 직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계속 적용 여부 또는 기
임금 삭감분 환급 등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신뢰
·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차
원의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7

참고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 및 규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

□ 출연(연) 임금피크제('15.10.~) : 1년차 △10%, 2년차 △15%

구 분	도입시기	임금피크제 전후 정년		임금감액률		(참고)우수연구원 임금피크제			
		도입 전	도입 후	1차년도 (만60세)	2차년도 (만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KIST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19.3%	△23.5%	△27.8%	△32.0%
녹색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미도입			
기초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20.0%	△30.0%	△40.0%	△40.0%
생명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15% × 인건비 확보율(최저 48,000천원, 최고 △15%)			
KISTI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미운영			
한의학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20.0%	△20.0%	△25.0%	△25.0%
생기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미운영			
ETRI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미도입			
국보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미도입			
건설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20.0%	△30.0%	△30.0%	-
철도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23.5%	△32.0%	△40.5%	△49.0%
표준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20.0%	△25.0%	△30.0%	△35.0%
식품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40.0%	△40.0%	△40.0%	△40.0%
김치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미운영			
지자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40.5%	△49.0%	△49.0%	△49.0%
기계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32.0%	△36.3%	△40.5%	△40.5%
에기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20.0%	△25.0%	△30.0%	△30.0%
전기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40.0%	△40.0%	△50.0%	△50.0%
화학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23.5%	△27.8%	△32.0%	△36.3%
안전연	'15.10.	만61세	만61세	△10%	△15%	△23.5%	△27.8%	△32.0%	△36.3%
원자력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30.0%	△35.0%	△40.0%	△45.0%
재료연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32.0%	△40.5%	△49.0%	△57.5%
핵융합	'15.11.	만61세	만61세	△10%	△15%	미도입			

□ 임피제 적용 인원 및 신규채용 인원

9년 계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임피제 ^(1년차)	2,576명	210	244	289	312	335	319	340	256	271
별도정원	2,244명	131	233	231	264	250	282	281	309	263

* 임피제는 생일기준 만 61세 2년 전부터 2년간 적용되고 있어 연차별로 명확한 구분은 불가.
다만 동 표에서는 1년차 인원수만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해당기간 임피제 적용자는 2,810명

※ [참고] 개정안에 따른 정년연장 인원 및 재정 소요 규모(안)

* '24년도 임피제 대상자(60, 61세) 피크임금(59세)은 9,400만원, 임피적용 후 약 88%인 8,256만원

연도	2026년 (정년 62세)	2027년 (정년 63세)	2028년 (정년 63세)	2029년 (정년 64세)	2030년 (정년 64세)	2031년 (정년 65세)	2032년 (정년 65세)
연도별 정년연장 대상인원	293명	268명	571명	650명	983명	1,087명	1,521명
현행 임피 기준 (평균 8,256만원)	242억원	221억원	471억원	537억원	812억원	897억원	1,256억원
피크 임금 기준 (평균 9,400만원)	276억원	252억원	537억원	611억원	924억원	1,022억원	1,430억원

1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 개 요

- (목적)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우수연구원의 정년을 연장(61세→65세)함으로써 연구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12년~현재)

□ 운영현황

- (도입기관) 23개 기관 중 19개 기관 도입(16개 기관 선발·운영 중)
 - ※ (미도입 기관(4)) 녹색연, ETRI, 국보연, 핵융합 / (미운영 기관(3)) KISTI, 김치연, 생기연
- (운영인원) 455명 우수연구원 운영 중('24년 6월 말 기준)
 - ※ 정규직 연구직 인원의 10% 이내를 유지하면서, 매년 1% 내외 인원 선발

2 정년 후 재고용제도

□ 개 요

- (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경력 직원의 정년 후 재고용(계약직)을 통해 근무경험 사장을 방지하고자 퇴직 이후 최대 1~4년간 재고용

□ 운영현황

- (도입기관) 23개 기관 중 22개 기관 도입(20개 기관 선발·운영 중)
 - ※ (미도입 기관(1)) 녹색연 / (미운영 기관(2)) 김치연, 핵융합
- (운영인원) 527명 정년 후 재고용 중('22년말 기준)
 - ※ 전체 정원의 5% 이내로 운영

참고3

출연(연) 직종·연령대별 구조 및 정년연장 인원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12.)

□ 인력현황('24.6월말 현재)

○ (직종별) 연구직(65%) > 그 외 기술·행정·기능직(각 12% 수준)

	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비고
정규직	13,252	9,318	1,545	1,454	935	정규직 약 84%
무기계약직	1,284	91	249	248	696	
소계	15,990 (100%)	9,409 (64.7%)	1,794 (12.3%)	1,702 (11.7%)	1,631 (11.2%)	

* 비정규인력 별도 : 1,253명

○ (연령대별) 40대(33%)>30대(32%)>50대(26%)>60대(6.1%)>20대(2.6%) 순

기관명	계	연령대별 정규인력(현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4,535	377 2.6%	4,695 32.3%	4,800 33.0%	3,777 26.0%	887 6.1%
KIST	951	23	340	299	204	85
녹색연	62	2	29	27	3	1
기초연	396	17	123	127	113	16
생명연	659	24	197	254	151	33
KISTI	547	15	157	191	163	21
한의학	326	4	103	150	60	9
생기연	1,123	24	352	455	256	37
ETRI	2,258	64	517	602	964	111
국보연	523	14	203	213	84	9
건설연	684	7	172	219	257	29
철도연	356	5	98	95	135	24
표준연	496	15	168	157	110	46
식품연	322	8	137	97	54	26
김치연	103	2	50	34	11	6
지자연	515	7	155	164	144	45
기계연	518	15	185	167	113	38
에기연	550	8	216	182	106	38
전기연	670	23	258	182	169	39
화학연	625	18	278	191	92	46
안전연	341	9	114	166	41	11
원자력	1,700	61	618	517	329	176
재료연	397	6	154	111	98	28
핵융합	413	6	72	201	121	13

※ 직접고용 및 전일제 환산 기준 (ex 주 20시간 근무 시 20/40 = 0.5명)

(기관별 현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합산 시 표의 합계와 상이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19~'23) 정년연장 현황

○ 정년퇴직 대상 총 1,630명 중 실제 퇴직 424명(26%), 계속고용 1,206명(74%)

연도	61세 정년퇴직 대상(A)	실제 정년퇴직(B)		기관 계속고용(C=D+E)		우수연구원(D)		정년 후 재고용(E)	
		인원	비율 (B/A)	인원	비율 (C/A)	인원	비율 (D/A)	인원	비율 (E/A)
2019	264	71	26.9%	193	73.1%	58	22.0%	135	51.1%
2020	294	70	23.8%	224	76.2%	64	21.8%	160	54.4%
2021	314	70	22.3%	244	77.7%	71	22.6%	173	55.1%
2022	316	73	23.1%	243	76.9%	62	19.6%	181	57.3%
2023	442	140	31.7%	302	68.3%	106	24.0%	196	44.3%
5년 계	1,630	424	26.0%	1,206	74.0%	361	22.1%	845	51.8%